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6년 8월 28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 13 호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3항 중 “국장”을 “실·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성 위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관 성 우
	직 성 위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신 용 규 (3 9 0 - 7 6 0 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임원)	제9조(임원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비상임이사는 건축, 토목, 개발 사업 등 관련 전문가와 회계, 경영, 세무, 법률, 행정 등의 전문가로 하되, 시의 공사 소관업무 담당 <u>국장</u> 2인을 당 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.	③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<u>실·국장</u> ——— —————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
[참고사항]

□ 「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일부발췌

제12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으로 한정한다.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·국장,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